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
----------	---

발의년월일 : 1998. 6. 22.

발 의 자 : 이근수교육위원외3인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5467호; 1997.12.17.)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15611호; 1998. 1.20.)됨에 따라, 동 규정 제53조에서 위임한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안 제2조)
- 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1일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안 제2조)

3. 제안근거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5611호 ; 1998. 1.20.)

4. 조 례 안 : 덧붙임

5.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책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 선거인,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한다.

1. 선거인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
2.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 : 1일 3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